#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연구 

이 상 윤


#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상 윤



#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Schemes to improve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연구자: 이상윤(연구위원)<br>Lee, Sang-Yoon

2016. 6. 30.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의무 및 벌칙의 부과원칙이 정립 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관련행 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square$ 이러한 점에서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 칙의 부과실태 및 유사법령상 제재유형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의 무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처벌기준을 제시하 고자 함

## ․ 주요 내용

$\square$ 제 2 장에서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 기 위하여 원자력안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행 정질서벌, 과징금 등의 주요내용 및 그 부과실태에 관하여 살펴봄
$\square$ 제 3 장에서는 에너지관계법 중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대표적 인 법령인 가스관계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 관리법 등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을 분석함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적합성 강화, 처벌수위의 적정화, 처벌체계의 합리화 등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후, 본분에서 다루지 못한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 II. 기대효과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게 적정한 벌칙을 부과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확립에 기여함2 주제어: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I.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The lack of a principle for the imposition of a duty or for the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types of violation for which the Nuclear Safety Act imposes no punishment or a minor penalty has diminished consistency in penalties and is anticipated to undermine practical effect of related administration.
$\square$ In an effort to address such problems,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reasonableness of the types and magnitude of penalties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penalties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the types of penalties under similar statutes and to propose standards for penalty provisions reasonably applicable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breach of a duty.

## П. Main Contents

$\square$ Chapter $\Pi$ looks into major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punishments,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penalty surcharges, etc.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in order to dig out problems of penalty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square$ Chapter III analyzes penalty provisions in similar legislation cases, including gas-related acts,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Oil Pipeline Safety Control Act, which are representative statutes on safety control, among energy-related laws.
$\square$ Chapter IV comprehensively reviews the issues analyzed as above and then suggests schemes to improve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constitutional validity, the reasonableness of the level of penalties, and the rationalization of the penalty system.
$\square$ Chapter V comprehensively summarizes and rearranges the issues and proposals discussed as above and then presents problems in the penalty system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in the main text, and the future direction i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 III. Expected Effect

$\squa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the system for nuclear safety, on which people can rely, by imposing reasonable penalties to those who violate the Nuclear Safety Act so as to secure practical effect of regulation.

[^0]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9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9

1. 연구의 배경 ..... 9
2. 연구의 목적 ..... 10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3. 연구의 범위 ..... 11
4. 연구의 방법 ..... 11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 13
제 1 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용 ..... 13
5. 행정형벌 ..... 13
6. 행정질서벌 ..... 19
7. 과징금 ..... 22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 26
8. 개 관 ..... 26
9. 과징금 처분현황 ..... 27
10. 과태료 처분현황 ..... 32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 39
제 1 절 가스 관계법상 벌칙규정 ..... 39
11. 도시가스사업법 ..... 39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49
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58
제 2 절 기타 입법례상 벌칙규정 ..... 71
14. 위험물 안전관리법 ..... 71
15. 송유관 안전관리법 ..... 77
제 4 장 벌칙규정의 종합검토와 개선방안 ..... 81
제 1 절 행정형벌 개선방안 ..... 81
16. 헌법적합성의 강화 ..... 81
17. 처벌수위의 적정화 ..... 85
제 2 절 벌칙운용의 합리화 ..... 90
18. 처벌체계의 문제점 ..... 90
19. 처벌의 합리화방안 ..... 94
20. 처벌의 체계화방안 ..... 101
제 5 장 결 론 ..... 105
참 고 문 헌 ..... 10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행정상 위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 서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의 행정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양각색 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행정법령 상 "형벌법규의 과잉현상"ㅣㅣㅇㅣ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동일 또는 유 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도 법령마다 각각 다른 법정형이 규정됨으로 서, 벌칙규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정 부부처에서 필요하여 소관법령을 제•개정할 때에 다른 유사입법례에 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조항에 관한 면밀한 비교•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칙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제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과 원칙 수립과 일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원자력안전법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전 등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 113 조-제 121 조)을 두어, 관련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 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및 제 30 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연 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 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 20 조, 제 30 조

[^1]의2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를 신청할 때,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은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운영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 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6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8조 제2호). 다만, 원자 력안전법 제 11 조(허가기준) 제4호에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품질보증계획서의 준수의무 및 그 의무위 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에서 는 제재가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의무 및 벌칙의 부과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일관성이 저하되 고 있으며, 관련행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원자력사고의 대규모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원자력 안 전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국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 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 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내용적•체계적 적정성을 제고 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 안전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 칙의 부과실태 및 유사법령상 제재유형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벌칙 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의무위반의 정도에 상응하 는 나름대로의 처벌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본 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유사입법 례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명에 "안전"이라 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 예컨대 가스 관계법 등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을 중심 으로 하여, 우선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벌칙의 부과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스관계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 령을 중심으로 해당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유형을 비교분석함 으로서,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유형•경중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 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실효성 강 화를 위한 벌칙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행정법령상 벌칙제도에 관한 선행 논문 및 보 고서의 분석, 관련법령의 내용 및 체계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 헌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유 형•경중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하고, 유사법률 위반 시 제재유형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론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의 부과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법령 개선방안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워크숍 또는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

제 1 장 서 론

견을 수렴함으로써, 개선방안의 실무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 제 2 장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개관

## 제 1 절 벌칙규정의 주요내응

## 1. 행정형벌

(1) 개 관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이란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 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정지,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2)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행정벌로서의 행정형벌은 행정법규가 정 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형사벌적 제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원자력 안전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에 서도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다양한 행정형 벌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이러한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미수범 및 법인 의 처벌 여부가 문제로 되며, 이로부터 원자력안전법은 양벌규정 및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하에서 는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자로의 파괴

원자력안전법 제113조에서는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 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이러한 죄를 범
2)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I (제14판), 법문사, 2010, 500면.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 항). 이상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제3항), 이상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 음모 또는 선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3) 원자로 등의 부당조작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제1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물질이나 원자로 등을 부 당하게 조작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고, 결국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11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을 가한 사람은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제 1 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4) 비밀누설

원자력에 관한 비밀이 대내•외적으로 누설되는 경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법의 시행목적 외에는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 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11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 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제108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 허가 • 명령 등 위반행위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과 판독업무 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운영하는 과정에 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 건설공사를 공 사를 정지하거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 116 조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 판독업무 자 등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1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2호),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정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제3호)에 대하여는 3 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6) 변경허가 • 승인 등 위반행위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등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1호), 부지 및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2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원자력안전 법상 각종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제3호),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 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에의 출입 또는 거주제한 명령 등을 위반한 자(제4호), 핵원료물질사용자에 대한 기술기준 시정 또는 보완 명령 등을 위반한 자(제5호),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처분 금 지 등을 위반한 자(제6호), 안전관련설비의 허가기준 부적합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서는 성능검증관리기 관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 주기적 안 전성평가결과 등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위반한 자, 계량관리 규정 등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안 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붙여진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 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3)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113 | (1) 원자로 파괴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의 침해 또는 기타 공공안전의 문란 | - 사형 • 무기 또 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2)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위의 행위 | $\begin{aligned} & \text { - 사형 또는 무 } \\ & \text { 기징역 } \end{aligned}$ |
|  |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미수범 | - 미수범 처벌 |

3) 원자력안전법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비 - 음모 또는 선동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 114 | (1)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 조작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초래 | -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  | (2) 제 1 항의 죄로 인한 사람의 사망(결과적 가중범) | -3년 이상의 유 기징역 |
| 115 | - 업무상 취득한 비밀누설(§108) 행위 | - 10 년 이하의 |
| 116 | 1. 허가 -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한 사용 소지•사업 등의 행위(제 10 조제 1 항 전단•제 20 조제 1 항 전단 • 제 30 조제 1 항 전단 • 제 30 조의 2 제 1 항 전단•제 35 조제 1 항 전단 및 제 2 항 전 단•제 45 조제 1 항 전단•제 53 조제 1 항 전단•제 54 조제 1 항 - 제 63 조제 1 항 전단 또는 제 78 조제 1 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 금(병과가능) |
|  | 2. 필요한 안전조치명령 위반(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 41 조 • 제 50 조제 2 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  |
|  | 3. 사업 또는 업무정지명령 위반(제 17 조제 1 항 • 제 24 조제 1 항 - 제 32 조 • 제 38 조제 1 항 • 제 48 조 • 제 57 조제 1 항 - 제 59 조의 2 제 3 항 - 제 66 조제 1 항 또는 제 81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위반) |  |
| 117 | 1.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승인 없 이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제 10 조제 1 항 후단. 제 20 조제 1 항 후단 - 제 30 조제 1 항 후단 - 제 30 조 의 2 제 1 항 후단•제 35 조제 1 항 후단 및 제 2 항 후단•제 45 조제 1 항 후단•제 53 조제 1 항 후단 또는 제63조제 1 항 후단 위반) | -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병과가능)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포함] - 제 28 조제 7 항[제 34 조 및 제 44 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 포함] • 제 37 조제 2 항 • 제 47 조제 2 항 - 제 56 조제 2 항 - 제 65 조제 2 항 • 제 75 조제 2 항 또는 제104조제 3 항 위반) |  |
|  | 2. 제출 의무 위반행위(제 23 조제 1 항 [제 34 조제 1 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6조[제3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제 40 조제 1 항 - 제 88 조제2항 또는 제102조 위반) |  |
|  | 3. 변경승인 위반행위(제 15 조제 1 항 후단[제 29 조 • 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제28조제 1 항 후단[제 3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위반) |  |
|  | 4.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위반행위(제99조제 1 항 위반) |  |
|  | 5. 보고의무 위반 및 거짓 보고행위(제59조의 2 제 6항 위반) |  |

## 2. 행정질서벌

(1) 개 관

행정벌의 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질서벌이란 "일반사회의 법익 또는 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 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 해지는 제재"4)를 의미하고, 결국 행정질서벌은 일종의 금전벌로서의 과태료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과태료를 "행정법상의 질서벌적
4)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 • 이대성, 원자력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14면.

인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인 바,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 는 일종의 금전벌"5)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은 행정질서벌을 부과•징수할 때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할 뿐 이고, 대부분의 행정질서벌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서도 다양한 위반행위별 과 태료 부과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내 용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 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자, 발전용원자로설치 자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판독업무자에 대한 등록기준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등에 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자, 원자력관계사 업자 및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
5) 박영도•강문수, 과태료 •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7면.

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위반행위별 행정질서벌(과태료)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6)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begin{gathered} 119 \\ (1) \end{gathered}$ | 1. 신고위반행위 또는 거짓신고행위(제 10 조제 1 항 단서 - 제 15 조제 1 항 단서[제 29 조 • 제 34 조 • 제 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제 15 조의 2 [제 29 조 및 제 34 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 포함]•제 20 조제 1 항 단서•제 28 조 제 1 항 단서[제 3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 30 조제 1 항 단서 - 제 30 조의 2 제 1 항 단서 - 제 31 조제 1 항•제 33 조•제 35 조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 단서 - 제 42 조제 1 항 단서 - 제 43 조 [제 51 조 제 62 조•제 69 조 및 제 83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제 45 조제 1 항 단서 - 제 52 조제 1 항 • 제 53 조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제 53 조의 2 제 1 항 및 제 3 항 - 제 54 조제 2 항 • 제 60 조제 1 항 단서 • 제 63 조제 1 항 단서•제 71 조•제 76 조제 1 항 단서 • 제 78조제 2 항 또는 제 95 조제 1 항 위반) | - 3천만 원 이하 |
|  | 2.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행위(제40조제2항. 제 50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 52 조제 2 항 - 제 53 조의 2제4항 및 제 5 항•제59조제1항 및 제3항•제59 조의 2 제 7 항 • 제 61 조 • 제 68 조제 1 항 및 제 3 항 • 제70조제 3 항 및 제 4 항 • 제 72 조 • 제 73 조 • 제 74 조제 1 항 • 제91조 또는 제 106 조제 1 항 위반) |  |
|  | 3. 기록비치의무 위반 또는 거짓기록행위(제 18 조[제 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25조[제34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제 39 조 • 제 49 조 • 제 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 위반) |  |
|  | 4. 시정 - 보완명령 위반 행위(제 80 조제 2 항에 따른 명령 위반)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 5. 변경승인 위반 행위(제 28 조제 1 항 후단[제 34 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제42조제1항 후 단 - 제 60 조제 1 항 후단 - 제 76 조제 1 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 위반) |  |
|  | 6. 성능검증 관련서류 위조•조작 행위(제 15 조의 2 위반) |  |
|  | 7. 교육의무 위반 행위(제106조제3항 위반) |  |

## 3. 과징 금

(1) 개 관

위에서 서술한 행정벌로서의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과 같이 전통 적인 제재수단 외에도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징금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인•허가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공표제도 등도 들 수 있다. 여 기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상 규정하고 있는 과징 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과징금에 관하여는 합의된 개념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현행법령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전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라 하겠다.7) 과징금은 당초 "행정법 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박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6) 원자력안전법 제 119 조 제 1 항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 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7)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공정거래법(법률 제3320) 제6조에서 최초로 과징금이 도입된 후, 각종 법령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전개되고 있다. 강문수 -이순태-나채준, 과징금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원자 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3, 21-22면 참조.

있어서 행정벌 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8)를 기대하면서 도입되었다. 그 후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와 함께 과징금의 유형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제도, 즉 변형과징금제도"9) 를 들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경우도 행정질서벌이자 금전적 제재로 서의 과태료와 함께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변형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제 17 조, 제 47 조, 제 57 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 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 24 조 제 2 항, 제 38 조 제 2 항, 제 66 조 제 2 항, 제 81 조 제 2 항 등에서 이러한 조항을 각각 인용하고 있다.
(2) 내 용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서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정 지를 갈음하여 50 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 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원자 력안전법 제 24 조에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의 정지에 갈음 하는 과징금(제2항), 제38조에서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 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2항), 제66조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 설•운영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 2 항)에서 각각 제 17 조를 준용하고 있다.

[^2]원자력안전법 제48조에서도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 억 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57조에서도 방사 성동위원소 등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 또 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3항). 제 81 조에서는 판독업무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 법상 위반행위별 행정질서벌(과태료)과 과징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원자력안전법상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현황10)

| 구 분 | $\begin{gathered} \text { 과징금(1차) } \\ \text { (만원) } \end{gathered}$ | $\begin{gathered} \text { 과태료(1차) } \\ \text { (만원) } \end{gathered}$ |
| :---: | :---: | :---: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신) 3 개월. 45 백 <br> (허) 허가취소 | (허, 신) 3 백 |
| - 허가 일부터 1년 내에 사업 미 개 시 또는 1년 이상 중단 | $\begin{aligned} & \text { (생•판) } 2 \text { 개ㅇㅝㅝ, } 50 \text { 백 } \\ & \begin{array}{ll} \text { (사) } & \text { 개월, } 40 \text { 백 } \\ \text { (이) } & \text { 2개월, } 80 \text { 백 } \end{array} \end{aligned}$ |  |
| - 제 53 조제 1 항 전단 위반, 미 허가 |  |  |
| - 제57조제 1 항 업무정지 위반, 사업 . 업무 계속 |  |  |
| - 제53조제 1 항 후단 위반, 미 변경 허가 | (생•판) 3 개 ㅇㅝㅝ, 75 백 (사) 3 개월, 60 백 (이) 3 개 월, 120 백 |  |
| - 제53조제 1 항 단서 위반, 미 변경 신고 |  | (허) 3 백 |
| - 제53조제2항 후단 위반, 미 변경 신고 | (신) 2개월, 30백 | (신) 3 백 |
| - 제 53 조제 4 항에서 준용하는 제 14 조 | (신) 3개월, 45백 |  |

[^3]| 구 분 | 과징금 (1차) <br> (만원) | 과태료(1차) <br> (만원) |
| :---: | :---: | :---: |
| 제 1 호•제 2 호•제 4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허) 허가취소 |  |
| - 제 55 조제 1 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  |  |
| - 제56조제 1 항에 따른 검사 미 수검 |  |  |
| - 제98조제2항.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  |  |
| - 제56조제2항 위반, 검사 보완명령 불이행 | (생•판) 2 개월, 50 백 <br> (사) 2 개월, 40 백 <br> (이) 2 개월, 80 뱁 <br> (신) 2 개월, 30 백 (※ 제 98 존 해당) |  |
| - 제98조제1항•3항 위반, 검사를 위 한 보고명령 및 보완명령 불이행 |  |  |
| - 제59조제 1 항 위반, 기술기준 미 준수 |  | (허) 3 백 |
| - 제 92 조제 1 항 위반, 방사선장해 발 생 등 미 보고 |  |  |
| - 제59조제 2 항 위반,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  |  |
| - 제92조제 2 항 위반, 방사선장해방 지 명령 불이행 |  |  |
| - 제59조제3항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 준수 | (생•판) 2 개월, 50 백 <br> (사) 2 개월, 40 백 <br> (이) 2개월, 80 백 <br> (신) 1개월, 15 백 <br> (※ 제 106 조만 해당) | (허) 3 백 |
| - 제106조제1항 위반, 교육•훈련 미 실시 |  | (허•신) 2 백 |
| - 제 70 조제 1 항•제 2 항 위반, 방사성폐 기물 무단 처분 |  |  |
| - 제70조제3항•제4항 위반, 방사성폐기 물 부적합 처분 |  | (허, 신) 3 백 |
| - 제58조 위반, 건강진단•피폭•선량 측정기록 누락 |  | (허) 2 백 |
| - 제60조제 1 항 전단 위반, 설계 등 미 승인 |  |  |
| - 제60조제 1 항 후단 위반, 미 변경 승인 |  | (제•수) 3백 |
| - 제 60 조제 1 항 단서 위반, 미 변경 신고, 거짓 신고 |  | (제 • 수)2백 |

$\left.\begin{array}{c||c|c}\hline \text { 구 분 } & \begin{array}{c}\text { 과징금(1차) } \\ \text { (만원) }\end{array} & \begin{array}{c}\text { 과태료(1차) } \\ \text { (만원) }\end{array} \\ \hline \begin{array}{l}\text { - 제61조 위반, 설 계 승인 등 검사를 } \\ \text {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 } \\ \text { 은 기기를 사용한 경우 }\end{array} & & \text { (허•신•제•수) } \\ \text { 3백 }\end{array}\right]$
※(신)신고사용자, (허)허가사용자, (생)생산허가자, (판)판매허가자, (사)사용허가자, (이)이동사용허가자, (제)제작허가자, (수)수입허가자

## 제 2 절 벌칙규정의 운용실태

## 1. 개 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 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 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이래 2015년 6월 30일까지 상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확보 미흡,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방사산안전관리자 직무 불이행, 방사산장해방지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약 100 건에 달하는 과징금 처 분을 하였고,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 성, 건강진단 부적절 등을 이유로 수백 건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2014년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으로 300 만 원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

으로 고리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에 따라 9,000 만 원의 과징금 등을 처분하였고, 고시 1 호기 사건방생관련 정보기록 의 누락으로 300 만 원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2011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6월 30 일까지 원자력안전법상 벌칙 등 처분현황에 관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전술한 징역,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부과(형사고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과징금 처분현황

첫째, 2012년도의 경우, 8월 16 일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확보 미흡을 이유로 4 백만 원 외 2건을 처분하였고, 11 월 8 일 에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위반을 이유로 5백만 원 외 1건을 처분하였으 며, 12월 27일에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을 이유로 1 천만 원 외 3건을 각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의 경 우, 5월 6일에 허가기준(인력) 미달을 이유로 4백만 원 외 11건을 처 분하였고, 8 월 29 일에도 역시 허가기준(인력) 미달을 이유로 750 만 원 외 2건을 처분하였으며, 11월 이후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을 이유로 1천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 년의 경우, 1 월 10 일부터 5 월말까지 방사성동위원소 허가한도 초과 취득을 이유로 750 만 원 외 9건을 처분하였고, 6월 13 일에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 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1 천만 원 외 5 건을 처분하 였으며, 9 월 15 일 이후에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 행 부적합을 이유로 1 천만 원 외 8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15년도의 경우, 3월 22일에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1,500 만 원 외 7건을 처분하였고, 3월 30일 에도 같은 이유로 1,500 만 원 외 5 건을 처분하였으며, 6 월 2 일에 방사

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4 백만 원 외 5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2014년 9월 12일에 원자로상부구조물(IHA)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 \cdot 2$ 호기에 제작•설치(2009년~2011년)함에 있어 품질승급 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반규격품(재료 또는 부품)을 IHA 제작에 사용 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는 IHA 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5,000 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31일에 고 리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연료 인출을 이유로 9,00만 원의 과징금, 2013년 10 월 4일에 고리1호기 EDG 고의차단을 이유로 4,500 만 원의 과징금, 2014년 1월 21일에 한빛2호기 SG 용접계획서 미제출 을 이유로 4,500만 원의 과징금, 2015년 6월 1일에 고리2호기 격납건 물 국부누설률시험 미실시를 이유로 3,000 만 원의 과징금 등 총 7 건 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 상 과징금의 주요 처분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 처분현황(2011.10.26~2015.6.30) ${ }^{11)}$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 원자로상부구조물(IHA)을 신고리 1•2호 <br> 기 및 신월성 $1 \cdot 2$ 2호기에 제작 $\cdot$ 설치 <br> (2009년~2011년)함에 있어 품질승급 <br> 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반규격품(재 <br> 료 또는 부품)을 IHA 제작에 사용하였 <br> 고, 이에 따라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 <br> 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 <br> 격에 맞지 않는 IHA를 설치 | 제11조 제2호 <br> 제21조 제2호 | 5,000 |
|  | 한울 1호기 전원공급설비 볼트체결수 미 <br> 준수 및 내진성능 불만족 | 제21조 | 3,750 |

[^4]|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2-07-31 | 고리 1호기 EDG 복구조치 미이행 및 핵 연료 인출 | 제26조 | 9,000 |
| 2013-10-04 | 고리 1호기 EDG 고의차단 | 제26조 | 4,500 |
| 2014-01-22 | 한빛 2호기 SG 용접계획서 미제출 | 제26조 | 4,500 |
| 2015-06-01 | 고리 2호기 격납건물 국부누설률시험 미 실시 | 제26조 | 3,000 |
| 2012-08-16 |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1,000 |
| 2012-11-08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허가 기준 위반 | 제53조 | 750 |
| 2013-05-06 |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서 부적합 | 제53조 | 750 |
| 2013-05-06 | 허가한도 초과 취득 | 제53조 | 1,125 |
| 2013-05-06 | 일시적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750 |
| 2013-05-06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등 | 제 $53,58,59$ 조 | 750 |
| 2013-11-15 | 일시적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750 |
| 2013-12-13 | 개봉선원(I-131, T1-201) 연간 허가량 초과 사용 | 제53조 | 500 |
| 2014-01-10 | 방사성동위원소 허가한도 초과 취득 | 제53조 | 750 |
| 2014-02-07 | 방사선발생장치생산변경허가 미준수 | 제53조 | 500 |
| 2014-02-07 | 일시적사용장소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750 |
| 2014-02-07 | 개봉방사성동위원소(Mo-99) 허가량 초과 | 제53조 | 500 |
| 2014-06-13 | 개봉선원(I-123) 연간 허가량 초과사용 | 제53조 | 500 |
| 2014-09-15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1,000 |
| 2014-09-15 | 본사 및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미 준수 | 제53조 | 1,000 |
| 2014-09-15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1,000 |
| 2014-12-23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변경허가 위반 | 제53조 제1항 후단 | 750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5-03-22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1,500 |
| 2015-03-22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1,000 |
| 2015-03-22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부적합 등 | 제53조 | 1,000 |
| 2015-03-22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허가 위반 | 제53조 제1항 후단 | 1,500 |
| 2015-03-30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3조 | 500 |
| 2015-03-30 | 방사성동위원소(I-125) 연간 허가량 초과 사용 | 제53조 제1항 후단 | 500 |
| 2015-03-30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무 <br> 미 준수 | 제53조 | 750 |
| 2015-03-30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변경허가 위반 | 제53조 제 1 항 후단 | 500 |
| 2015-06-02 | 방사성동위원소 허가량 초과 사용 | 제53조 제1항 후단 | 1,500 |
| 2015-06-02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무단변경 | 제53조 제1항 | 500 |
| 2015-06-02 |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 미실시 | $\begin{gathered} \text { 제53조 제1항 후단 } \\ \text { 제59조 제3항 } \end{gathered}$ | 1,000 |
| 2015-06-02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 $\begin{aligned} & \text { 제 } 53 \text { 조 제 } 1 \text { 항 단서 } \\ & \text { 제 } 59 \text { 조 제 } 1 \cdot 3 \text { 항 } \end{aligned}$ | 6,000 |
| 2012-08-16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확보 미흡 | 제55조 | 400 |
| 2013-05-06 | 허가기준(인력) 미달 | 제55조 | 400 |
| 2013-05-06 | 업무대행 전담인력 부적합 | 제55조 | 500 |
| 2013-05-06 | 허가기준(인력기준) 미달 | 제55조 | 500 |
| 2013-05-06 | 방사선안전관리자 확보 부적합 | 제55조 | 400 |
| 2013-08-29 | 허가기준(인력기준) 미달 | 제55조 | 750 |
| 2014-01-10 | 방사선안전관리자 확보 부적합 | 제55조 | 500 |
| 2014-02-07 | 등록기준 미달 | 제55조 | 250 |
| 2014-02-07 | 등록기준 미달 | 제55조 | 500 |
| 2014-06-13 |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인력기준 위반 | 제55조 | 1,000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5-03-22 | 허가기준(인력 기준 )미달 | 제55조 | 400 |
| 2015-03-22 | 확보인력 부적합 | 제55조 | 400 |
| 2015-03-30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부 기간 미 확보 | 제55조 제 1 항 | 500 |
| 2014-09-15 |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허가 시 장비 및 인력기준 미 준수 | 제55조 | 1,000 |
| 2015-06-02 | 방사선안전관리자 미확보 | 제 55 조 제1항 제 4 호 | 400 |
| 2015-06-02 | 방사선원 생산현황 미보고 | 제58조 <br> 제98조 제1항 | 500 |
| 2012-08-16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불이행 | 제59조 | 750 |
| 2012-11-08 | 기준준수의무 위반(방사선장해방지조치) | 제59조 | 500 |
| 2012-12-27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 제59조 | 1,000 |
| 2012-12-27 |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 제59조 | 1,000 |
| 2012-12-27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 제59조 | 500 |
| 2012-12-27 | 기준준수의무 위반(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제59조 | 1,200 |
| 2013-05-06 |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 제59조 | 750 |
| 2013-05-06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이행 부적합 | 제59조 | 750 |
| 2013-05-06 | 방사선안전관리 직무이행 부적합 | 제59조 | 600 |
| 2013-05-06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부적합 | 제59조 | 600 |
| 2013-08-29 |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및 방사선량률 측 정기 미휴대 | 제59조 | 1,000 |
| 2013-08-29 |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및 출입관리 미흡 | 제59조 | 1,000 |
| 2013-11-08 | 개인선량계 등 미착용 | 제59조 | 1,000 |
| 2014-05-13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 제59조 | 1,000 |
| 2014-05-13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 제59조 | 1,000 |
| 2014-05-13 | 이동사용안전관리기술기준및안전관리규 정미준수 | 제59조 | 1,000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4-06-13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 제59조 | 1,500 |
| 2014-06-13 | 이동사용안전관리기술기준및안전관리규 정미준수 | 제59조 | 1,000 |
| 2014-06-13 | 이동사용안전관리의기술기준및안전관리 규정미준수 | 제59조 | 1,000 |
| 2014-06-13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준수 | 제59조 | 1,500 |
| 2014-09-15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 관리규정 미 준수 | 제59조 | 1,000 |
| 2014-10-13 | 방사선안전관리 직무 수행 부적합 | 제59조 제3항 | 400 |
| 2014-12-23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 무 수행 부적합 | 제59조 제3항 | 1,000 |
| 2014-12-23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부적합 | 제59조 제3항 | 1,000 |
| 2015-03-22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 | 제106,91,59조 | 1,200 |
| 2015-03-22 |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의무 및 직 무 수행 부적합 | 제59조 | 750 |
| 2015-03-30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제59조 제3항 | 400 |

3. 과태료 처분현황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의 경우, 4월 12일에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를 이유로 300 만 원 외 12 건을 처분하였고, 8 월 16 일에 방사선 작업일지 일부 미작성을 이유로 300 만 원 외 27 건을 처분하였 으며, 10 월 29 일에 방사선조사기의 일일점검 미흡을 이유로 300 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11 월 8 일에는 판매 분야 안전관리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75 만 원 외 1 건을 처분하 였으며, 12 월 27 일에 이동사용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 위반 을 이유로 300 만 원 외 2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5월 6일에는 업무대행실적 미기록을 이유로 50 만 원 외 34 건을 처분 하였고, 7 월 22 일에는 건강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150 만 원 외 9건을 처분하였으며, 7월 25 일 에는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 만원 외 8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8월 29 일에는 이동 사용 분야의 기술기준 위반을 이유로 300 만 원 외 6건을 처분하였고, 11월 8일에는 방사선관리구역 설치 및 운영 부적합을 이유로 100 만 원 외 5건을 처분하였으며, 그 이후 12월 13 일 방사선장해방지조지 미준수를 이유로 50 만 원 외 25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월 10 일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 만원을 처분하였고, 2월 7일에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을 이유로 50만원 외 8 건을 처분하였으며, 4월 4일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를 이 유로 300 만 원 외 11 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5 월 13 일에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미실시를 이유로 300 만 원 외 16 건을 처분하였고, 6월 13 일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을 이유로 300 만 원 외 6건을 처분하였으며, 6월 16 일에는 방사 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를 이유로 300 만 원 외 3 건을 처분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상당수의 과태료 처 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2월 28일에 주계약자 품질보증계 획서의 변경에 따른 신한울 $1 \cdot 2$ 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변경신고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서 정한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300 만 원의 과태료, 2015년 8월 24일에 월성 2-3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하여 법정 신고 기간(3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300 만 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안전과의 경우는 2012년 7월 31일에 고리 1호기 사건발생 관련정보 기록 누락을 이유로 300 만 원 의 과태료, 2013년 12월 2일 하나로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와 채널기능시험 미실시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 2015년 3월 24 일 한울 1 호기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를 이유로 300 만 원의 과 태료 등 총 5 건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체적인 과태료 처분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5】 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처분현황(2011. 10. 26~2015. 6.30) ${ }^{12 \text { )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begin{aligned} & \text { 금액 } \\ & \text { (만운) } \end{aligned}$ |
| :---: | :---: | :---: | :---: |
| 2014-02-28 | 주계약자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에 따른 신한울 $1 \cdot 2$ 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 서 개정 및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변 경신고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 조에서 정한 기한 내 수행하지 않았음 | 제 10 조 제 1 항 | 300 |
| 2015-08-25 | 월성 2,3 호기 펌프 구매계약에 대해 법정 신고기간(30일 이내)을 초과하여 신고함 | 제 15 조의 2 | 300 |
| 2012-07-31 | 한울1 전원공급설비 교체 시 미신고 | 제 20 조 | 300 |
| 2015-03-24 | 고리4 화재 주수신기 설치위치 거짓신고 | 제 20 조 | 300 |
| 2012-07-31 | 고리1 사건발생관련 정보기록 누락 | 제 25 조 | 300 |
| 2012-10-29 |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 제53조 | 300 |
| 2012-11-08 |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미준수 | 제53조 | 75 |
| 2013-07-25 |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 제53조 | 100 |
| 2013-11-15 |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불이행 | 제53조 | 200 |
| 2013-11-15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Co-60 선원 감량) 미수행 | 제53조 | 50 |
| 2013-12-17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및 SPOT 결과보고 부적합 | 제53조 | 300 |
| 2014-05-13 |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 미실시 | 제53조 | 300 |
| 2014-06-13 |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 제53조 | 300 |

12)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4-10-13 |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의 작업개시 후 신고 | 제 53 조 | 300 |
| 2014-12-23 |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 내용 미 준수 | 제53조 제1항 단서 | 50 |
| 2012-04-12 |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및 방사선원 반출입 기록 미흡 | 제58조 | 300 |
| 2012-08-16 | 방사선 작업일지 일부 미작성 | 제58조 | 300 |
| 2012-08-16 |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측정 미실시 | 제58조 | 75 |
| 2013-05-06 | 업무대행실적 미기록 | 제58조 | 50 |
| 2013-07-25 |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비치 부적합 | 제58조 | 50 |
| 2013-12-17 |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 | 제58조 | 150 |
| 2014-04-04 | 방사선안전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부적절 | 제58조 | 100 |
| 2014-06-13 | 방사선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미흡 | 제58조 | 300 |
| 2014-10-13 |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기 술기준 부적합 | 제58조 | 300 |
| 2015-03-22 | 안전관리 기록 및 비치 부적합 | 제58조 | 300 |
| 2015-03-30 |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물 배출기록 및 비 치 미 준수 | 제58조 | 75 |
| 2015-06-02 | 방사선안전관리 기록•비치 미준수 | 제58조 | 25 |
| 2012-04-12 | 방사선측정기 교정 미실시 | 제59조 | 30 |
| 2012-08-16 | 이동사용의 안전관리 미준수 | 제59조 | 300 |
| 2012-08-16 | 폐기대상 밀봉선원을 장기간 보관 | 제59조 | 75 |
| 2012-10-29 | 방사선조사기의 일일점검 미흡 | 제59조 | 300 |
| 2012-11-08 | 기준준수의무 위반(판매분야 안전관리) | 제59조 | 75 |
| 2012-11-08 | 대행업체 현장의 방사선안전관리 부적합 | 제59조 | 75 |
| 2012-12-27 | 이동사용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 준 위반 | 제59조 | 300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금액 <br> (만원) |
| :---: | :---: | :---: | :---: |
| 2012-12-27 | 밀봉선원 취급 기준 위반 등 | 제59,98조 | 50 |
| 2013-05-06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 한 표면오염도 측정 미실시 | 제59조 | 50 |
| 2013-07-25 |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 | 제59조 | 50 |
| 2013-08-23 | 판매자 기술기준 위반 | 제59조 | 75 |
| 2013-08-29 | 이동사용 분야의 기술기준 위반 (작업조 편성) | 제59조 | 300 |
| 2013-08-29 |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서 부적합 | 제59조 | 100 |
| 2013-11-08 | 방사선관리구역 설치•운영 부적합 | 제59조 | 100 |
| 2013-11-08 | 감마선조사장치 일일점검 및 기록비치 미흡 | 제59조 | 100 |
| 2013-11-15 | 방사선원 판매현황 지연보고 | 제59조 | 100 |
| 2013-12-13 | 방사선(능)측정기교정미실시 | 제59조 | 50 |
| 2014-01-10 | 폐기선원 관리 부적합 | 제59조 | 50 |
| 2014-02-07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제59조 | 400 |
| 2014-06-13 |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률 측정 위반 | 제59조 | 150 |
| 2014-06-17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취급기준 위반 | 제59조 | 150 |
| 2014-09-15 | 업무의 대행절차 위반 | 제59조 | 50 |
| 2014-12-23 | 개인선량계 관리 미흡 | 제 59 조 제 $1 \cdot 3$ 항 | 50 |
| 2015-03-22 | 저장시설에 방사능 표지 미부착 및 주의 사항 미게시 | 제59조 | 300 |
| 2015-03-30 | 기술기준의 만족이 입증되지 않은 운반 용기 사용 | 제59조 제1항 | 50 |
| 2015-06-02 | 방사성물질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 미준 수 | 제59조 제1항 | 100 |
| 2013-07-22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위반 | 제70조 | 150 |
| 2012-04-12 | 방사선(능)측정기 교정 미실시 | 제71조 | 300 |


|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begin{aligned} & \text { 금액 } \\ & \text { (만운) } \end{aligned}$ |
| :---: | :---: | :---: | :---: |
| 2012-04-12 |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성 | 제71조 | 100 |
| 2014-05-13 |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기 술기준 부적합 | 제72조 | 300 |
| 2014-09-15 | 안전성 입증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운반 용기 사용 | 제72조 | 50 |
| 2015-03-30 | 방사성물질 운반서류 미작성 | 제72조 | 300 |
| 2015-06-02 | 포장 및 운반 관련 기술기준 미준수 | 제72조 | 100 |
| 2012-12-27 | 장해방지조치 위반(사용선원 주변의 방 <br> 사선량률 측정관리 기준 미준수) | 제91조 | 50 |
| 2013-12-02 | 하나로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채널기능시험 미실시 | 제91조 | 300 |
| 2013-12-13 | 방사선장해방지조치(측정) 미준수 | 제91조 | 50 |
| 2013-07-22 |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시설의 방사선량률 측정 미흡 | 제91조 | 100 |
| 2013-07-22 | 건강진단 미실시 | 제91조 | 150 |
| 2013-12-13 | 방사선장해방지조치(측정) 미준수 | 제91조 | 50 |
| 2014-02-07 | 방사선량률 및 오염상황 측정 미흡 | 제91조 | 150 |
| 2014-04-04 |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초과 | 제91조 | 300 |
| 2014-12-23 | 선량한도 초과자 발생 | 제91조 제2항 | 300 |
| 2015-03-22 | 방사선측정 부적합 | 제91조 | 300 |
| 2013-05-06 | 방사선작업개시 후 신규종사자 교육실시 | 제106조 | 100 |
| 2013-07-25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종사 전 교육훈 련 미실시 | 제106조 | 100 |
| 2013-12-17 | 방사선작업종사자 작업 전 교육 및 건강 검진 미실시 | 제106조 | 300 |
| 2014-04-04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및 건강검진 미 실시 | 제106조 | 150 |
| 2015-06-02 |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미실시 | 제106조 제1항 | 100 |

# 제 3 장 유사 입법례상 벌칙규정의 분석 

## 제 1 절 가스 관계법상 벌칙규정

## 1. 도시가스사업법

(1) 개관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제1조)하기 위 하여 제정된 법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 이라는 육성법적 의미와 가스의 공급•사용시설을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라는 규제법적 성격이 공존하는 분야의 법률에 해당한다. 여 하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제3 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제 10 조의 2 ),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제 11 조),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제출(제 18 조의 3 ), 가스공급규정의 승인(제20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안전 관리의 장(제 5 장)을 따로 두어 안전관리규정(제 26 조), 가스시설의 안전 유지(제26조의2), 가스시설의 개선명령(제27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관리업무 대행(제 28 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제 28 조의 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제28조의3), 안전관리자(제29조), 안 전교육(제 30 조)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업법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 48 조부터 제 54 조까지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형벌

첫째, 가스공급의 방해 및 장애 발생에 관한 행정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 48 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

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 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 1 항), 도시가스사업자의 가 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 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 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제2항),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 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에게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제 3 항), 가스사 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게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제4항)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에 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상에서 서술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결과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13항).

둘째, 허가•승인•신고•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 자(제1호) 및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영위한 자(제2호) 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에서도 가스도매사 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 항을 변경한 자(제1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영 위한 자(제1호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제1호의3),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자(제2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제 3 호) 등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51조에서도 허가•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제53조의 2 에서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에 대하여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 술한 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13)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48 | (1)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 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 거나 그 기능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 급을 방해 | - 1 년 이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2)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 스충전시설 및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 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 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 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 | - 5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3)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 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 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 해 | -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3) 도시가스사업법 제 48 조부터 제 53 조의 2 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 - 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50 | 1. 가스도매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충전 사업을 영위 |  |
|  | 1의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 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 가스제조사업을 영위 |  |
|  | 2.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 |  |
|  | 3-15. < 생릭 |  |
| 51 | 1.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1 의 3 에 해당하 는 자 중 도시가스충 전사업자, 나프타부생 가스 - 바이오가스제 조사업자 또는 합성 천연가스제조사업자 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
|  | 1의2.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  |
|  | 1의3. 도시가스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 |  |
|  | 1의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 |  |
|  | 2-15. \ll 생략> |  |
| 52 | <삭제 |  |
| 53 | 1. 가스공큽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 -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br> - 다만, 5 또는 6 에 해 당하는 자 중 도시가 스충전사업자, 나프타 부 생가스•바이오가 스제조사업자 또는 합 성천연가스제조사업 자는 500 만 원 이하 의 벌금 |
|  |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 계획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 |  |
|  | 3. 공급규정의 변경 승인 신청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  |
|  | 4.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 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5.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 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 설설치자 |  |
|  | 6. 안전관리자의 선임 - 해임 또는 퇴직 등 을 신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
|  | 7-9. < 생략> |  |
| $\begin{aligned} & 53 \\ & -2 \end{aligned}$ | -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

(3) 과태료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이자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천연가스를 반입•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 전에 수입•수출 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통보한 자(제2호),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 한 자(제2호의2) 등에 대하여는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지위 승계자(제1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제 2 호),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제3호）등에 대하여는 2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에서 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사업의 개시•휴 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 1호），「주택법」등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 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로서，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관한 통지를 도시가스사업자 에게 하지 아니한 시공자（제2호），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요금의 납부방법，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 호의2）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 다．그 밖에도 같은 조에서는 안전점검기록의 작성－보존의무 위반（제 4항），시설개선 권고 불이행（제5항），안전조치 불이행（제6항）등에 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표－7】도시가스사업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14）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54 <br> （1） | 1．계약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이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 자 및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3천만 원 이하 |
|  | 2．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계약체결 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통보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
|  | 2의2．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가스도매사업자 |  |
|  | 3．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 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54$(2)$ | 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급시설설치자 |  |
|  | 4.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 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 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 급시설설치자 |  |
|  | 5.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  |
|  | 5 의 2 .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외 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
|  | 6. 5 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의 제출 및 협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  | 7-17. < 생략> |  |
|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 시가스사업자 지위 승계자 | - 2천만 원 이하 |
|  | 2.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한 시공자 |  |
|  | 3.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  |
|  | 4. 시공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  |
|  | 5.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 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 공자 |  |
|  | 6-9. < 생략>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54$(3) | 1.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천연가스수출입업 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 - 1 천만 원 이하 |
|  | 2.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도시가스사업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시공자 |  |
|  | 2의2. 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 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  | 2의3.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 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
|  | 3-5. <생략> |  |
| $54$ <br> (4) | - 안전점검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 스충전사업자 | - 500만 원 이하 |
| 54 | 1.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  |
| (5) | 2.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300난 원 이하 |
| 54 <br> (6) | - 제 28 조의 2 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 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 | - 200만 원 이하 |

14)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4) 과징금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전술한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변경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사업법 제 10 조 제 1 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가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 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 반한 경우,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질기준 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등(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의나 과 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친 경우, 품질기준에 맞 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 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 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법 제 10 조의 8 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천연가스수 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개 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 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제1조)하기 위하여 제 정된 법률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제4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제 5 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제 5 조의 2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제 5 조의 3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제 5 조의 4 ), 사업 개시 등의 신 고(제 7 조), 승계(제 8 조), 허가•등록의 취소(제 9 조), 공급자의 의무(제 10 조), 안전관리규정(제 11 조), 용기 등의 표시(제 11 조의 2 ), 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 13 조), 안전관리자(제 15 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 16 조의 $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제 16 조의 3 ), 용기 등의 검사(제 17 조), 용기 등 의 품질보장 등(제 18 조),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 18 조의 2 , 제18조의3), 사용신고(제20조), 수입신고(제21조), 고압가스배관의 안전 조치(제 23 조의 6 ) 등 다양한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에서는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 과태료, 과징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행정형벌

첫째, 고압가스시설 등의 손괴에 관한 것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38조에서는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 조한 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 1 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

는 2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 2 항) 각각 처하도 록 하고 있다. 전자의 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같 은 조 제4항), 후자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 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원 이 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등 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는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제1호), 저장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판매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제2호), 용기 등 제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 등을 제조한 자(제3호), 고 압가스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제4호) 등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0 조에서는 고압가스 제 조 허가 및 저장소 설치 허가 또는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로 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1호), 용 기 등 제조 등록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제8호) 등에 대하여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제1호) 등에 대하여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정기검사나 수 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4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제5 호) 등에 대하여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15)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38 | (1)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 하의 벌금 |
|  |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 | - 2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 하의 벌금 |
|  | (3) (2)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 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결과적 가중범) | - (상해)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 <br> - (사망)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 만 원 이하 의 벌금 |
|  | (4) 제 1 항의 미수범 | - 미수범 처벌 |
| 39 | 1.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 하의 벌금 |
|  | 2. 저장소 설치 허가 또는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 매한 자 |  |
|  | 3. 용기 등 제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 등을 제조한 자 |  |
|  | 4.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  |
|  | 5. 고압가스 운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40 | 6.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 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
|  | 7.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 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
|  | 8. 7 의 협의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  | 9. 7에 따른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  |
|  | 10.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  |
|  | 11.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 - 보존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 관 보유 사업자 |  |
|  | 12.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
|  | 13.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
|  | 1. 고압가스 제조자나 저장소 설치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 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  |
|  | 2. 용기 등 제조자, 고압가스 수입업자나 고압가스 운반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 자 변경은 제외)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 하의 벌금 |
|  | 3.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 판매자가 안전점 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설기준과 기 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2.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  |
|  | 3.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지 아니한 고압가 스제조자 등 |  |
|  | 4.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 5.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  |
|  | 6. 회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  |
|  |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자 |  |

(3)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제1호), 안전관리규정 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 안전관리규정의 변 경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제3호),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 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 고자(제4호)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 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제 1 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 시설 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2호의2), 충전•판 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제3호의2) 등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8 조부터 제 42 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 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에 대하여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자 및 저장소 설치자 또는 고압가스 판 매자로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 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제1호), 일정한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 제조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 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자 등의 지위 승계자 (제1호),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 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등(제2호)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표-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16)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begin{aligned} & 43 \\ & \text { (1) } \end{aligned}$ |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한 고압가스 제조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 | - 2천만 원 이하 |
|  | 2.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 조신고자 |  |
|  | 3.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  |
|  | 4.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 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  |
|  | 5.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 한 자 |  |
|  | 6.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 등을 수 입한 자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 5.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 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  |
|  | 6. 용기 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
| $\begin{aligned} & 43 \\ & \text { (4) } \end{aligned}$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 업자 등의 지위승계자 | - 300만 원 이하 |
|  | 2.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 리자 및 종사자 |  |
|  | 3.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등, 특정고압 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등 |  |

(4) 과징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경우도 영업 등의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 는 변형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의2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 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처분에 대신하여 4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른 [별표 2]에서는 연간매출액(제2호 가목)과 연간매출 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제2호 나목)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 하고 있다.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3 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 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개 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은 "액화석 유가스의 수출입•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제1 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액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제8 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9조), 외국가스용품의 제 조등록(제 10 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제 17 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제20조), 충전량 등의 표시(제23조), 공급규정(제25조), 액화 석유가스의 품질유지 및 품질검사(제26조, 제27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 특히 액법 제5장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규정(제 31 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제 32 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제33조), 안전관리자(제34조), 시설의 시공 및 시공기록 등 의 보존•제출(제35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제36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37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38조), 안전교육 (제4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액법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다양한 의 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행정형벌

첫째, 가스시설의 손괴 등에 대한 행정형벌로서, 액법 제65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

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 1 항),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8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 3 항), 이 죄를 범 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는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같은 조에서는 가스용품을 개 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 밖에서 액법 제65조에서는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 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제5항),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한 자(제7항) 등에 대한 행정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액법 제66조 이하에서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등의 의 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액법 제66조에서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 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 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액법 제67조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누설한 사 람에 대하여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68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제1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 운송사업을 한 자(제 3 호) 등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69조에서는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제2호),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4호)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70조 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제1호) 등에 대하여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있다. 액법 제71조에서는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제1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3호), 정 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제 7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제8호) 등에 대하여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액법에서는 다양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이상에서 서술한 액법상 행정형벌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10】 액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17)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65 |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 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 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 해한 자 | -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2)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3)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의 죄를 범한 자(결과적 가중범)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4) (3)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한 경우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상해)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원 이 하의 벌금 <br> - (사망)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 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 해한 자 |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6)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가 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 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 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등의 승 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 시설을 변경한 자 | -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
|  | (8) (1)과 (5)의 죄의 미수범 처벌 | - 미수범 처벌 |
| 66 |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 출입업을 한 자 |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 (2)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 |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70 | 6.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 증기간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 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액화석 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 정사용자 |  |
|  | 2.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및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선임의무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
|  | 3.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
| 71 | 1.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 |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2.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 를 판매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 명령 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
|  | 3.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  |
|  | 4.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 우의 수요자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 의 무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 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
|  | 5.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 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
|  | 6.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 우의 공급 중지 또는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7.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br>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등에 <br>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 <br> 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  |
|  | 8.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 <br> 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  |

(3) 과태료

액법 제 73 조 제 1 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액 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1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제2호) 등에 대하여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 은 조 제 3 항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 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1호), 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 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2호),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제6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제7호),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제11호) 등에 대하여는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제1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

[^5]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제3호) 등에 대 하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액법상 과태료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액법상 위반행위별 과태료18)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begin{aligned} & 73 \\ & \text { (1) } \end{aligned}$ | 1.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가격 안정,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업 무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 출입업자 | - 2천만 원 이하 |
|  | 2.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 입업자 |  |
| $\begin{aligned} & 73 \\ & \text { (2) } \end{aligned}$ | 1.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 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 1천만 원 이하 |
|  | 2.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액화석유가스 수 출입업자 |  |
|  | 3.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 대한 출입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  |
| $73$(3) | 1.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 - 300만 원 이하 |
|  | 2. 사업개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 가스 사업자 등 |  |
|  | 3.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의 지위 승계자 |  |
|  | 4.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 5.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을 위반하여 액 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  |
|  | 6.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  |
|  | 7.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  |
|  | 8. 가스용품의 제조 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
|  | 9.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  |
|  | 10.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액화 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  |
|  | 11.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
|  | 12.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 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  |
|  | 13.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  |
|  | 14.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
|  | 15.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
|  | 16.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 대한 출입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


| 조 | 위반행위 | 과태료 |
| :---: | :---: | :---: |
|  | 17.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  | 18.판매가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 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  |

1.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시설개선 미이행 시 가스공급 차단 등의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 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 경한 자

73
5. 가스용품 개조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스용품 을 개조한 자
6.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 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7.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8.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 용자
10.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 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4) 과징금

액법에서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변형과징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액법 제14조에서는 액화석유 가스 사업자 등에 관한 과징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액법 제 14 조에서는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18) 액법 제 73 조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 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 8 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 13 조 제 1 항 제 5 호) 등으로서, 사업 의 정지 또는 제한이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대신하여 4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다음으로 액 법 제22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액법 제2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 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제21조 제2항 제3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 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 우(제21조 제2항 제4호) 등으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 분을 대신하여 20 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항). 또한 같은 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액화석 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 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와 함께 같 은 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자가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 지처분을 대신하여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 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항).

## 제 2 절 기타 입법례상 벌칙규정

## 1. 위험물 안전관리법

(1) 개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 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 }^{19)}$ 이러한 입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제6조)에 관한 허가를 비롯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 완 공검사(제 9 조), 위험물안전관리자(제 15 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제 16 조), 예방규정(제 17 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제 18 조),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제20조, 제 21 조), 출입•검사(제22조),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 사(제22조의2),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제23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에 대한 조치명령(제24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제26조), 응급조 치•통보 및 조치명령(제27조), 안전교육(제28조) 등을 규정하여, 매우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에서는 이러한 각종 의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벌칙(제33조부터 제37조 까지)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제39조)와 함께 과 징금(제 13 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상 행정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6](2) 행정형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에서는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 소(이하 "제조소 등"이라 함)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 1 항).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제34조에서는 업무상 과 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 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제35조에서는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한 자(제 1 호) 등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6조에서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1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제3호) 등에 대하여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7조에서는 위험물의 취급 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제2호) 등 에 대하여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반행위별 행정형벌20）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1）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 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 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 33 | （2）（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br> －（사망）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 34 | （1）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 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 하의 벌금 |
|  | （2）（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 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 35 | 1．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 －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2．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 |  |
|  | 3．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
|  | 4．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 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
|  | 5．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위험 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37 | 10.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 |
|  | 11.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 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 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 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
|  | 12. 탱크시험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 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13.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
|  | 14.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  |
|  | 15.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 |  |
|  |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 지 아니한 자 |  |
|  | 2.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
|  | 3.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 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
|  | 4.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
|  | 5. 자격이 없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위험 물운송자 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없이 위험 물을 운송한 자 |  |


| 조 | 위반행위 | 행정형벌 |
| :---: | :---: | :---: |
|  | 6. 출입 • 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인 <br> 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 검사 등 <br> 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한 경우 |  |

(3)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39 조에서는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한 자(제 1 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제2호),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3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4호),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 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5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제6호),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제7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제8 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제9호)에 대하여 는 2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4) 과징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 는 변경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제12조 제1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
20)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33 조부터 제 27 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하여 조문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제12조 제2호），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한 때（제 12 조 제 4 호），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정기검 사를 받지 아니한 때（제 12 조 제 6 호，제 7 호）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 2．송유관 안전관리법

（1）개 요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21)}$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는 공사계획의 인가（제3조），완성검사（제 5 조），안전관리 규정（제6조），안전관리자（제7조），안전검사（제8조）등과 같은 다양한 안 전규제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이러한 각종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 정형벌（제 13 조부터 제 15 조까지）과 과태료（제 17 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술한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이하에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 및 과태료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행정형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 13 조 제 1 항에서는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 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7]자(제1호),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제2호)에 대하여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수범 처벌[제6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제1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송유관설치자 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미수범 처벌[제6항]). 위 의 제 1 항 또는 제 3 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위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서는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송유 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 는 2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 1항),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제2항).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제1호), 안전관리 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제3호), 안전관리규 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제4호),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 5 호) 등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15 조에서는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과태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경미한 공사나 재해복구공 사 및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한 경우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1호),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 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제2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호),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령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제7조 제 3 항), 이에 따르면 제 1 호와 제 2 호의 경우는 100 만 원을, 제 3 호와 제 4 호의 경우는 300 만 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제 4 장 벌칙규정의 종합검토와 개선방안

## 제 1 절 행정형벌 개선방안

## 1. 헌법적합성의 강화

(1) 행정형벌과 헌법원리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 을 살펴보기로 한다. ${ }^{22)}$ 원자력안전법 제 113 조는 원자로의 파괴로 국 민의 생명•신체•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자, 전쟁•천재지변에 의하 여 원자로가 파괴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각각 사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매우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예비•음모 죄도 본형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전술 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 대부분의 유사 입 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의•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 여, 원자력안전법은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형과 무기징 역이라는 국내 최고의 형벌을 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과 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과할 수 있는 것은 헌 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22) 여기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최소한의 제안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4 개의 세부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으 로 구성된다. 이상의 서술 중에서 " "안의 내용은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10면.

또한 원자력시설의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가 도시가스사 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에 따른 시설의 파괴 등으로 입는 손해•피해와 비교한 경우, 그 광범성이나 지속성 등에 차이가 있다 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과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을 살 펴보기로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를 파괴하 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유기징역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전"과 "문 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법적 개념이 매우 추상적•포괄적 이어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 서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가능성이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자의적 법집행의 방지"23) 등을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 11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원 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히거나 공 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하여, 앞에서 살펴본 가스관 계법 등의 유사법제와는 다른 입법상태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은 평

[^8]상시 또는 전쟁•천재지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원자로의 파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 법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손괴 및 기능장해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손괴 및 기능장해로 인하여 사람 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 다. 원자로의 파괴로 인한 피해의 속성을 고려하면 다른 분야의 유사 법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손괴보다 피해의 범위가 넓고, 세대 간 지속된다는 등의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유사 입법례보다 원자력시설 의 파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행법이 원자로의 파괴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원 자로 파괴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일탈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24)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14조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을 가한 자에게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 당한 조작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 다. 원자력안전법 제 114 조 제1항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 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24) 여기에서 말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cdots \cdots$.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전게), 18 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액법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시 설에 대한 손괴, 기능장해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손괴 및 기능장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에도 별도로 처 벌하고 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 과 그 위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원자로 및 관계시 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자체에 대한 처벌 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행법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 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의 부당한 조작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 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등 과 비교하면,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일탈한 것 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2) 헌법적합성 강화방안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 관련규정, 즉 제 113 조 및 제 114 조에 관해서는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즉, 제 113 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규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 다. $\cdots \cdots$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 }^{25}$ )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제 114 조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요건이 불명확하고, $\cdots \cdots$. 제2항은 형법의 상해치사와 내용 및 법정형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삭 제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제 113 조 및 제 114 조에 관해

[^9]서는 "제 113 조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범죄의 객체, 구성요건 행위, 양형 등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26)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또 한 규정의 재검토를 통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헌법적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원 자력안전법 제 113 조와 제 114 조의 경우 폐지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처벌수위의 적정화

(1) 처벌강도의 부적절

첫째, 원자력안전법 제 108 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직무종사자 또는 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 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는 제 108 조에서 정하 고 있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누설금지의무는 보통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이 개인의 명예 등과 결부되거나 국가안보나 안전보 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비밀유지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 가 매우 큰 것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원자력관련 직무종사자, 위 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은 대부분 국가안 보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액법 제67조에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과 액법의 경우 관련자가 업무상 지득 한 비밀은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국가안보나 안전보장 이라는 차원에서도 양 법의 가치와 보호법익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26)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 원자력 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5,174 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의 처벌강 도는 액법 제67조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 116 조 제 1 호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허가의무 위반, 운영허가의무 위반, 사업허가위무 위반, 사 용 및 소지허가의무 위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3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 2 호는 각종 기술기준 미달 및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 등 각종 의 안전조치의무를 명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 116 조 제 1 호의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에서 각종 허가의무 및 등록의무 위반의 경우 처해지는 처벌의 내용과 동일하다.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는 도시가스의 경우와는 달리 허가 규제 또는 등록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가 능성과 정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의 경우 가 도시가스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원자 력안전법 제 116 조 제 1 호의 각종 허가•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도시가스사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셋째, 원자력안전법 제117조는 변경허가 및 승인의무위반, 검사의무 위반, 검사거부 및 방해•기피, 제한구역 출입통제명령 위반, 원자력 관련 외항선박에 대한 규제준수 의무,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위반, 방 사성폐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 및 취급조건(면허조건) 위반, 방사 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사 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 의무 위반에 대 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에서도 각종 변경허가 및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40 조 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허가의무 위반의 처벌과 동일하고, 도시가스사 업법 제 59 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다. 원자력 시설의 건 설•운영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승인 의무는 도시가스사업법,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에 따른 각종 시설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과 비교하여 규제대상, 규제목적, 금지해제 등의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 처벌체계의 획일성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에서는 (ㄱ) 변경허가 등의 위반, 방사성페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운전 및 취급조건(면허조건) 위반, 방사선발생장 치 및 방사성물질 도난•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의무 위반의 경우와 (ㄴ) 각종 보고 및 서류제출의무 위반, 제한구역출입통제명령 위반 등 을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ㄱ)의 경우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ㄴ)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동일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형량으 로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의 획일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적정화방안의 제시

첫째,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의 처벌수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cdots \cdots \cdot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cdots \cdots$.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가 형법규정과 달리 법정형을 가 중하는 것이 형평상 바람직한 것이지 의문이 제기된다"27)고 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비밀누설금지 의 주체, 비밀유지의 대상, 비밀유지의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28)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과 위에서 서술한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안전법 제 115 조의 경우, 폐지하거나 액법 제67조와 같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처벌수위를 하 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제 116 조의 처벌체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 116 조 제 1 호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과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허가규제 또는 등록규제의 목적과 규제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의 가 능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도시가스사업법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원자력안전법 제 117 조의 처벌체계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제 117 조의 경우, 변경허가, 승인의무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동일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보다 약하게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시설 등의 중요성, 피해의 특수성 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 117 조의 경우는, 규제의 형평성•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ㄱ) 변경허가 등의 위반, 방사성페기물 처리제한 위반, 원자로
27) 정환삼•양맹호•김승수 • 윤성원 • 이대성, 원자력 관련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전게), 134면.
28)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전게), 175면.

운전 및 취급조건（면허조건）위반，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물질 도 난•분실 등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의 소지 및 양도•양수제한의무 위반의 경우와（ㄴ）각종 보고 및 서류 제출의무 위반，제한구역출입통제명령 위반 등을 그 처벌의 종류와 양형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물론（ㄱ）의 경우가（ㄴ）의 경우보다 처벌을 통한 가벌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보다 처벌수 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 117 조 제 2 호에서는＂제 10 조제 4 항（제 69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cdots \cdots$ 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2호）에 대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관해서는＂원자력안 전법 제 117 조 제 2 호는「제 10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바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cdots \cdots$（이나），제 10 조 제 4 항은 부지의 승인에 따른 공사 허용 규정이며，승인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은 제 10 조 제 3 항 $\cdots \cdots$（이므 로），「제 10 조 제 4 항」은「제 10 조 제 3 항」＂${ }^{29)}$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 이 있다．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이에 더하여 원자력안전법 제 10 조 제4항 자체에 대한 검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제 10 조 제 4 항 자체가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 어，＂승인의무의 부과와 승인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벌칙＂이라는 관 계설정이 애매한 상황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안전 법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0)}$ 이 경우，제 10 조의 취지가 건설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부지의 사용이라는 의미가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공사의 의미와 동일

29）정 훈•류권홍，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전게）， 178면．
30）제 10 조 제 2 호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 117 조에＂제 10 조 제4호를 위반하여 부지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사용（하거나 공 사 등을）한 자＂라는 호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의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0 조(건설허가) (3) 위원회는 발전 | 제 10 조(건설허가) (3) 발전용원자로 |
| 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 |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
| 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 |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
| 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이 | 부지를 사용하려면 위원회로부터 |
| 를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
|  |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2 절 벌칙운응의 합리화

1. 처벌체계의 문제점
(1) 처벌의 합리성 부족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안전에 관한 위반행위를 유 형화해 보면, 행정형벌만 가능한 위반행위가 있는 반면,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가 있다. 이로부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또 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 정형벌로만 처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적 법 적용실태를 보아도, 행정형벌과 함께 과징금 처분 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시 과징금 처분을 바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31) 행정형벌만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벌칙
31) 즉, 행정형벌과 과징금 처분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행정형벌은 적 용하지 않고 과징금만 처분하고 있다.

적용을 바로 하지 않고, 해당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계도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중한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계도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중한 위반행 위는 계도기회 없이 과징금 처분을 바로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 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만면, 처음부터 허가조차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도기간(시정 • 보완명령)이 주어지고, 그 기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궁극적 목적 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보호에 있고(제1조), 처벌•처분 은 단지 그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인 법 적용•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형벌 조항만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 등에 따라 행정형벌 대 신에 과징금•과태료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 여 처벌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처벌의 체계성 부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 16 조, 제 22 조, 제 34 조, 제 37 조에 따른 검사 결과, (ㄱ)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ㄴ) 허가신청서의 첨부 서 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 시정 - 보완을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위반 시 행정형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18 조 제 1 호)에 처할 수 있다. (ㄱ)의 허가기준에 미달 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 17 조, 제 24 조, 제 32 조, 제 38 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 등 행위를 하거나, 업무의 정지명령 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에게는 행정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 11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처할 수 있다. (ㄴ)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위반과 관련해서는, 첨부 서류 중 운영기술지침서(핵연료주기시설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 해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직접 규정(법 제26조 제2항, 제 34 조, 제 40 조 제2항)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허가 취소•정지(제24조), 행정형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118 조 제2호) 에 처할 수 있다(핵연료주기시설 안전관리규정 위반 시는 사용정지 등[제40조], 허가 취소 등[제38조], 3천만 원이하 과태료[제119조 제2 항] 부과 가능). 이상에서 서술한 원자력안전법상 (품질보증)검사에 따 른 행정형벌(과태료) 부과절차는 다음 면의 그림과 같다.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운용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품 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의 수행여부를 품질보 증검사(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원 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에 따라 지적사항을 발급(시정 • 보완 명령)하고 있다.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품질보증검사 지적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형벌의 부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보증계획서 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 직접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어 떤 경우 일차 시정•보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의 비체계성으로 인하여 법의 해석•집행에 혼란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품질보증계획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기술지침서와 같이 직접 벌칙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2)}$

[^10]【그림】(품질보증)검사에 따른 행정형벌(과태료) 부과절차33)


[^11]
## 2．처벌의 합리화방안

（1）제재수단의 성격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양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는 벌칙과 함 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어떤 특성을 가진 위반행위는 벌 칙만 처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로부터 각 제재수단의 성격을 분석한 후，그 특성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 다．첫째，원자력안전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 므로，그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처분대상 위 반행위라 하겠다．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부과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별표 11］에서 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만약，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 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둘째，행정형벌인 벌칙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검사의 기소 및 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제재로 서，행정관청이 검사에게 위반사실 등을 통보하더라도，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 조와 같이 전속 고발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34）행정관 청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 차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셋째，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그 부과절차에 대

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고발）에서는＂제66조（罰則）및 제67조 （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 1 항）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행정관청에는 부과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부과금액에 대한 재량만 인정되며, 그 부과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중복부과의 개선

어떠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중 어느 제재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실정법상 확립된 원칙은 없으 나, 일반적으로 유사한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과도한 제재처 분의 완화 등을 위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영업수행상의 의무"35) 위반 과 "행정협력적 의무"36) 위반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인 제재유형을 결 정하고, 개별적인 의무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제재유 형을 선택하고 있다. 즉, 제재수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 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업정지처분과 과태료의 선 택기준과 관련해서는 영업수행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선 택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37)는 과태
35) 영업수행상의 의무로는 (ㄱ)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행정관청의 판단을 요 하는 경우에 한함)를 할 의무, (ㄴ) 인적-물적 기준을 유지할 의무, 영업 개시의무, 표시•게시•공고의무, (ㄷ) 교육의무, 검사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명의대여 금지의무, (ㄹ) 설명의무, 건강검진 수진의무, 보험가입의무 등 준수사항(작위의무) 이행의무, (ㅁ) 결격자 선임금지,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 금지의무(부작위의무)를 지 킬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36) 행정협력적 의무로는 (ㄱ) 변경등록•신고(실태파악을 위한 단순 보고적인 것에 한함) 의무, (ㄴ) 승계•휴폐업•재개신고, 보고•자료제출, 조사•검사 등에 협력할 의무, (ㄷ) 면허증 등의 휴대•반납-갱신의무, 장부의 기록•보존(행정관청의 감독 목적을 위한 것에 한하고, 타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록보존은 영업수행상의 의무 로 분류) 등을 들 수 있다.
37)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전게), 500-501면 참조.

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의 경우도 제 10 조 제 1 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를 받지 아니 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제 116 조 제 1 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 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 119 조 제 1 항 제1호)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각각 제재수단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중복 부과는 입법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 므로38), 이를 중복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상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안전법 제 118 조 제 3 호 및 제 119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는 "제 28 조 제 1 항 후단(제 34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 항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과태 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형벌 부과대상 위반행위와 과 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중복적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발전용원 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승인의 중요 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인가 경미한 위반행위인가를 기준으 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인 벌칙규정만을 남겨두고 과태료에 관한 부 분은 삭제해야 할 것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방향으 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39)}$
38)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 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 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헌재 1994. 06. 30 결정, 92헌바38)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39) 그 밖에도 과태료 부과실태를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 따른 "원전 채널 및 선원 점검 미실시, 채널기능시험 미실시"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널기능시험 미실시는 "영업수행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
(3) 시정기회의 부여

일반적으로"시정(조치)명령"이란 "특정한 과거의 법규위반에 대하 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정작용"40)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시정명령은 "현재의 법 위반행위 중단 및 향후 유사행위의 재방 방지•억제"41)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학 상 하명에 해당하는 행 정행위로서, 행정형벌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과 함께 많은 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적법화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운용에서도 더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통한 계도기회가 주어지는 반 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는 계도기회 없이 과징금처분 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제재수단은 본질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므로, 제재를 하는 것보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경우도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시정기회의 부여 여부 및 입법형식은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재처분의 부과 여부 및 제재 정 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12]원자력안전법 시행령［별표 11］을 개정하여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업정지처분이 아니라＂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거나，아래의 식품위생법 과 같이 일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영 업정지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적 감면사유 관련규정】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1）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 소분 •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cdots \cdots)$ 는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 조까지，제 7 조제 4 항，제 8 조 또는 제 9 조제 4 항을 위반한 사실 $(\cdots \cdots)$ 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cdots \cdots$ ．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 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 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둘째，과태료의 경우는 법률의 입법형식상＂…부과한다＂로 되어 있 어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 조의2에서 감경범위를 제한하고 있다．42）따라서 위반행위별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사후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 위반행 위로서 과실 등 참작할 만한 사유로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 령을 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

4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 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미성년자 등인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 분의 50 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 항）．또한 같은 조 에서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 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 고 있다（제2항）．

이다. 셋째, 행정형벌의 경우는 기소편의주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7 조)에 따라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재량권이 검사에게 인정되므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양태,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벌칙규정과 과징금 처분규정이 있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경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벌칙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정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처벌절차를 개 시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계도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재를 하고, 중대한 위반행 위에 대하여는 계도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제재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 점은 법률규정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제도의 운영상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형벌의 위하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성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형벌이 부과되지 못하고, 계도 등만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형벌의 비범죄화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형벌인 벌칙 대신 과 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벌칙규정은 "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최종 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43)으로서, 행정형벌 외적인 수단으로 행정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43)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전게), 454면.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의무의 내용적 성격뿐만 아니라，의무위 반의 양태나 결과 등을 고려하여，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 정형벌인 벌칙이 아니라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행정형벌의 부과 여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 247 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법집 행 단계에서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행정형벌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과태료는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따라서 아래의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원자력안전법에서도 가능한 한 위반행위 의 양태나 결과 등에 따라 그 제재수단을 달리하도록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반행위，과태료 및 행정형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입법사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2）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2．제 13 조 또는 제 13 조의 2 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제 28 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1）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 사는 제 27 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 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3 조, 제 13 조의 2 또는 제 24 조의 3 제 4 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 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 65 조제 1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3 조, 제 13 조의 2 또는 제 24 조의 3 제 4 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 65 조제 1 호와 제 66 조제 1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3. 처벌의 체계화방안

(1) 입법적 사각지대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제1조)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설허가 내지 운영허 가 등을 받을 때 품질보증계획서,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리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관리규정은 인체•물 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형벌 또 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품질보증계획서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 11 조에서는 건설허가 등의 요건으로 품질보증 계획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제4호).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 독업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운영기술지침서, 안전관

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를 이유 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18조 제2호). 이와 같이 품질보증계획서의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종업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 록 하고 있을 뿐, 그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두지 않 고 있어 입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2) 사각지대의 해소

품질보증계획서에 관한 준수의무의 부과와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 칙의 부과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입 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무이거나 관련성이 높은 의무인 경 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해당 입법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입법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과 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 및 안전관리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제 1 항에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 2 항에 서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체계로부터는 해 당 의무가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 무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고, 그 의무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무이며, 처벌규정의 강도에서 안전관리규정에 비하여 운영기술지침서가 입법목적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보증서에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

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제1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 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제2호),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 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 청결상태 등 업 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 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제3호)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는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관리, 특수작업공정, 특수시험, 특수장비, 공구, 숙련도,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의 필요성(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운영기술 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호)을 보면,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 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조치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원자로 운영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상 품질보증시스템은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품질검사를 강화하면 할수록 불량품의 수는 줄일 수 있으나, 제품의 근본적인 품질제고는 어렵기 때문에 불량품을 구분하 는 개념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예방적 개념 을 도입한 것"44)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에 입각하여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상 허가를 받을 때 품질보증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라는 원자력안전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운영기술지침서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 등을 고려

[^13]하여 전문적으로 결정하여 할 문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만, 품질보 증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운영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품질보증계획서 준수의무는 운영기술지침서 준수의무보다는 경미한 의무로 보이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행정형벌보다는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의 위반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으로 인 한 사고 및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을 고려하고, 불량도 등 행정현실에 비추어 품질보증계획서 준수 확보가 간절하게 요청되 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는 원자력안전법상 벌칙규정의 내용 및 부과실태, 유사 입 법례의 벌칙규정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안전법상 벌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 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선행 연구와는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벌칙규 정의 현실적 운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행정형벌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벌칙규정의 운용실태에 입 각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로부터 종합성 또는 체계성의 부족이라는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받을 수도 있겠으나,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문에서 다루 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형벌의 범죄억제효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형벌로 인하여 행정상 의무위반행 위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수범자는 주로 원자력사업자 등 기업으로서, 이러한 수범자가 원자력 안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그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형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동기 형성과 행위를 보면, 원자력안전법상 의무위반행위는 기업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기업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형벌인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기업에 대하 여 경제적 손질을 부담시키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원자력안전법상 징역이나 벌금 등의 행정형벌로 처벌되는 행 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 전 도모"라는 원자력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규범의 집행력과 신뢰 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를 전적으로 비범죄화하기 보다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의 대 상행위로 점차 확대•전환하는 것이 기업범죄의 특성상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행정형 벌로 처벌되던 의무위반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과태료나 과징금의 부 과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추상적으로 평가한 불법의 정도와 위반사건 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결정해야 할 것이다.45)
둘째, 법정최고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형법, 형사소 송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 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무부 소관법률이나 군형법 등의 국방부 소관법률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국가정보 원 소관법률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 다. 전형적인 행정법령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소관) 제32조,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소관) 제93조, 방

[^14]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39조 제2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제 47 조 제 6 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제44조 제2항, 항공법 (국토교통부 소관) 제 157 조 및 제 158 조,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소관)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소관, 2017년 3월 30일 시 행예정) 제 138 조 및 제 139 조에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행정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원자력관계 법은 법무부 소관법률 등을 제외하고 몇 안 되는 전형적인 행정법령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적 원리에 저 촉될 우려가 있는 원자력안전법상 행정형벌 관련규정 및 원자력 관계 법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분야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강화를 주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문수•이순태•나채준, 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한 개선방안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3. 김남진•김연태, 행정법I(제14판), 법문사, 2010.

박영도•강문수,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09.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7.
이원우,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
반의 판단기준, 경제규제와 법 제 1 권 제 1 호(서울대학교 공익 산업 법센터, 2008).

이천현•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009.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관한 시론,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정환삼 • 양맹호 • 김승수 • 윤성원 • 이대성, 원자력 관련 법률의 벌칙
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012.
정 훈•류권홍,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원자력분야 규제체계 정합성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 2015.
2. 기 타

헌재 1990년 4월 2일 결정, 89헌가 113.
헌재 1994. 06. 30 결정, 92 헌바 38.

참고문헌

대법 2003. 2. 20 판결, 2001 두 5347.
원전 품질보증, 어떻게 이뤄지나, 에너지신문(2015.6.18.) <http://www. 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 [최종 방 문일자 : 2016.6.2.]


[^0]:    2 Key Words: Nuclear Safety Act, penalty provisions of the Nuclear Safety Act,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1]:    1) 이천현•권수진,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무부 용역보고서), 2009, 2면.
[^2]:    8) 강문수 - 이순태 • 나채준, 과징금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 구(전게), 22면.
    9) 강문수 - 이순태 - 나채준, 과징금 -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 구(전게), 22 면.
[^3]:    10)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4]:    11)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5]:    17) 액법 제 65 조부터 제 71 조까지의 규정내용을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 별로 요약•발췌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6]:    19)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서(제 2 조 제 1 호), 아염소산염류 등과 같은 산화성 고체(제 1 류), 황화린 등과 같은 가연성 고체(제 2 류), 칼류 등과 같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제 3 류), 특수 인화물 등과 같은 인화성 액체(제4류) 등으로서(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물질을 의미한다.
[^7]:    21）송유관 안전관리법에서는＂송유관＂을＂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제2 조 제2호），「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항 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등을 제외한 것＂（송 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8]:    23)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 구되는데,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헌재 1990 년 4월 2 일 결정, 89 헌가 113 등.
[^9]:    25) 정환삼•양맹호•김승수•윤성원•이대성, 원자력 관련법률의 벌칙규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전게), 132-134면. 서술 중에서 "" 안의 ( ) 부분은 필자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다.
[^10]:    32) 이상에서 서술한 (1) 처벌의 합리성 부족 및 (2) 처벌의 체계성 부족이라는 문제 에 대하여는 편의상 2. 처벌의 합리화방안 및 3. 처벌의 체계화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 후 도입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33)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자료(수정 후 인용).
[^12]:    로, 해당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징금)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40) 이원우,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 준, 경제규제와 법 제 1 권 제 1 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124 면. 이 시정 명령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위반행위로 발생하여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위법상태"이지만,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장래의 위반행위"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 2003. 2. 20, 2001 두 5347.
    4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관한 시론, 경제규제와 법 제 1 권 제 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164면(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

[^13]:    44) 원전 품질보증, 어떻게 이뤄지나, 에너지신문(2015.6.18.) [방문일자 : 2016.6.2.]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3).
[^14]:    45)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는 독일의 원자력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질서위반금(Bußgeld)과 질서위반법 제 30 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질서위반금"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